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 3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022. 12. 12.(월)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36

제출일자 : 2022.11.17.

회부일자 : 2022.11.22.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 이유

-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경험, 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공공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운영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등)

○ 추진 필요성

-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안정성, 전문성, 공익성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을 통해 효율성 있는 업무 수행이 필요

○ 위탁사무 내용

-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점검 및 유지관리
-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용료 징수
- 이용자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등

○ 공공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3. 3월 ~ 2026. 5월(3년간)

○ 수탁자 선정방식 및 사유 : 수의(공공위탁 :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 해당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공기관으로써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 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통해 축적된 전문성 및 공익성 확보, 경영의 지속 가능성 등 경상북도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특화될 것으로 사료됨

○ 소요예산 : 연간 1,875백만원

- 인 건 비 : 총 21명(정규 5, 공무 12, 기간제 4)
- 경 상 경 비 : 수리수선비, 보험료, 공공요금, 기타경비 등
- 초기비품비 : 수영장 집기류, 사무용품 등

○ 향후계획

- 2023. 3. : 1회 추경 예산 수립 및 위·수탁 협약
- 2023. 4.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3. 6. :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운영

4. 참고사항

○ 경상북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 기 간 : '22. 10. 14. ~ 10 18.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수탁기관 선정 적정성

검토 사항		검토 의견(직영과 비교)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직영 시 효율성 및 전문성이 부족함 • 민간위탁 시 공익성 부족 및 시설에 대한 책임성 부족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위탁을 통한 체계적 운영 관리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③	경제적 효율성	• 행정조직의 비대화 예방, 지역 공기업 (공공)위탁으로 비용 절감 가능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동일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 공기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다양한 편의 및 복지 제공
⑤	성과측정의 용이성	• 지역 공기업(공공)에 운영중인 동일 시설 비교로 정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적인 성과점검 및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성과분석 등 결과보고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90년 후반 민간위탁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수익성 저하로 운영 수탁계약해지 사례가 증가 • 주민편익시설 대부분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

- 심의결과 : 적정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도청 신도시 및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 내 주민편익시설의 민간(공공) 위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1)에 따라 설치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등으로서,
-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도청 신도시 및 인근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민간(공공)위탁 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탁 예정기관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은 안동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 시설 등 여러 위탁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의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많은 시설에 대한 수탁으로 운영관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향후 수탁 운영 시 적정 전문 전담 인력의 배치로 시설관리와 이용객의 편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생략>

참고 1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사업 현황

- ❖ 인근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 ❖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전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1. ~ 2023. 5.

○ 총사업비 : 191억원(도비)

○ 사업규모

-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4,240㎡)
- 수영장(25m×6레인), 찜질방(100명 규모), 실내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 어린이놀이방, 수상안전교육폴장(생존수영교육장) 등

※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공 정 률 : 60%(3층 골조 공사 완료)



■ 추진사항

○ '17. 5. : 주민편익시설 기본방침 수립

○ '19.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한국환경공단←(주)도화엔지니어링)

○ '20.12. : 기본(실시)설계 완료(한국환경공단 위수탁 추진)

○ '21. 6.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완료

○ '21.11. : 공사착공('23. 4. 준공예정)

※ 시공사 현황

- 시 공 사 : 제이디건설(주), 대표이사 전중달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상록 6길 6
- 공사기간 : (총괄) '21.11.~'23. 4., (1차) '21.11. 1.~'22. 2.28., (2차) '22. 2.17.~'23. 2.28.
- 도 급 액 : (총괄)9,386백만원 (1차) 246백만원 (2차) 8,078백만원 (3차) 1,062백만원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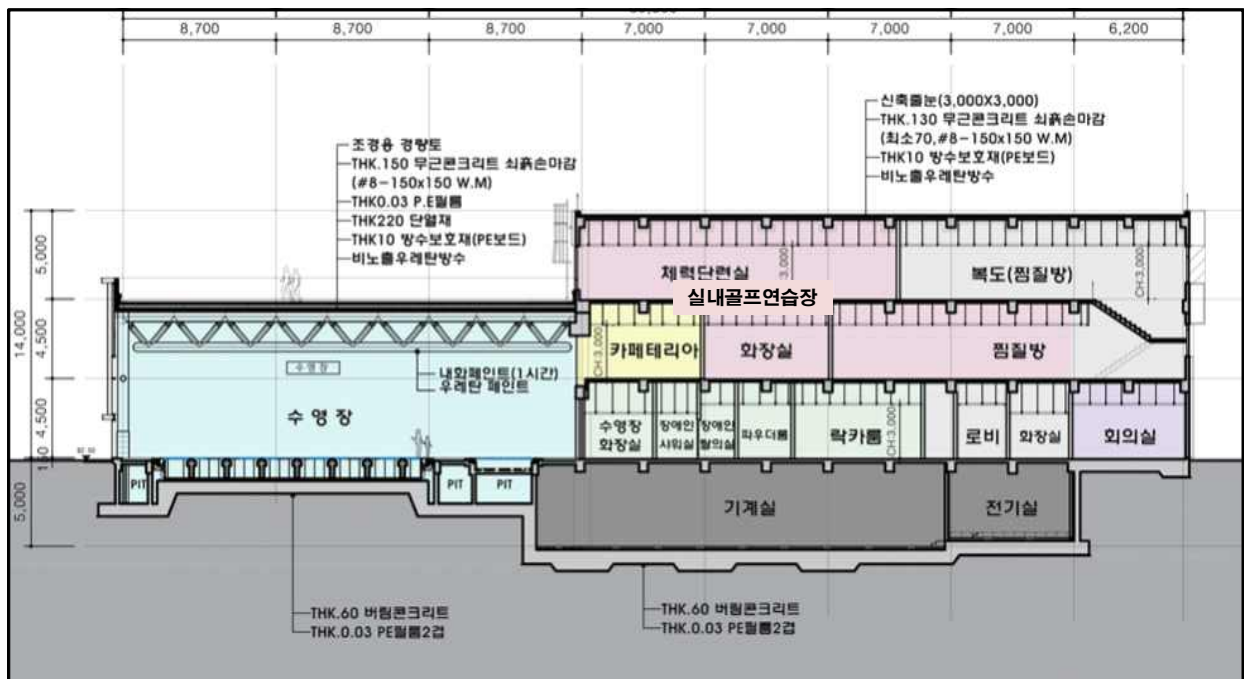
- 발전여열 활용으로 에너지효율 극대화 추진
- 인근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운영 등의 일자리 창출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의시설 건축계획

○ 시설물 배치계획

구 분		내 용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 3층 - 연면적 : 4,240.19㎡ ※ 계획부지면적 : 9,500㎡(맑은누리파크 부지면적 67,346㎡)
사업 내용	편의 시설	- 1층 : 수영장(25m, 6레인), 수상안전교육풀장(15m, 2레인) - 2층 : 찜질방(100명 규모), 놀이방 - 3층 :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지원 시설	- 1층 : 운영자 사무실(110㎡), 강사대기실, 의무실, - 2층 : 카페테리아 - 3층 : 사무실, 옥상정원
	부대 시설	- 태양광설비 - 폐열공급배관, 전기실, 기계실 - 주차장(178대)

○ 횡단면도



참고 1-2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위치도 및 조감도

○ 사업부지 현황



○ 주민편익시설 조감도



1. 명 칭(대표) : 안동시시설관리공단(손병순)

2.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육사로 203 (☎054-850-4500)

3. 설립목적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운영
-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

4. 설립일자 및 연혁

일 자	내 용
2006. 9. 15.	안동시 설립허가
2006. 12. 29.	등기_안동시시설관리공단

5.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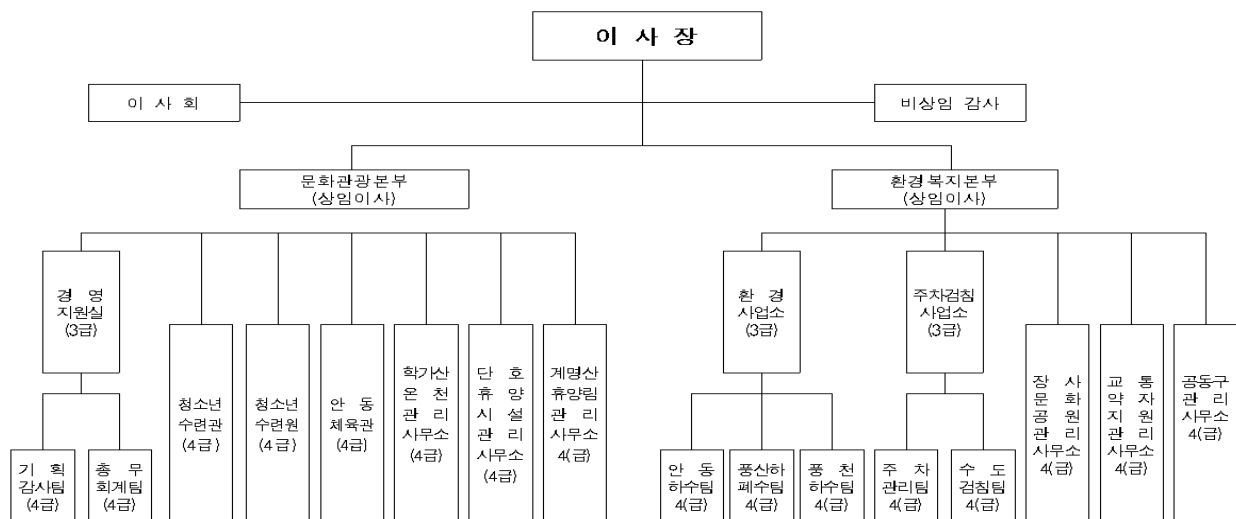
-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검침업무 수탁(2007년 ~ 현재)
- 학가산온천 수탁(2008년 ~ 현재)
- 공영주차장 수탁(2009년 ~ 현재)
- 안동체육관, 계명산휴양림 수탁(2010년 초 ~ 현재)
- 안동볼링장, 풍산폐수처리장,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수탁(2010년말~ 현재)
- 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 낙동강생태학습관, 마애유적전시관 및 솔숲문화공원 수탁(2013년 ~ 현재)
- 단호샌드파크캠핑장, 백조공원, 마을하수처리장 수탁(2014년 ~ 현재)
-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장사문화공원 수탁(2016년 ~ 현재)
- 풍천하수처리장, 안동터미널 공영주차장 수탁(2017년 ~ 현재)
- 도청신도시 공동구시설 수탁(2021년 ~ 현재)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이사장	손 병 순	現)안동시청 도시건설국장
문화관광본부장 직무대행	김 수 훈	現)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
환경복지본부장	김 재 술	前)안동시청 체육새마을과장

7. 수탁자 조직도

- 인력현황 : 237명('22.7월 현재)



8. 재무현황

- 자본금현황 : 총200,000천원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자본금	부동산	현금	200,000

- 부채현황 : 없음
- 수입현황 : 총24,935,956천 원

종 목	내 용	연 수입액(천원)
대행사업비	위탁사업 운영비	24,935,956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도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근로자복지, 취업지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

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3.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 4. 그 밖의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 ③ 재위탁 시에는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시에는 매 2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무와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등)

- ①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